

# 제2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

---

2024. 1. 31.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4년 1월 31일 14:00 ~ 14:44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김 주 현 위 원 장

김 용 재 위 원

이 복 현 위 원

유 상 대 위 원

김 용 진 위 원

####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4년도 제1차 서면 및 제1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4년도 제2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4년도 제1차 서면 및 제1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2024년도  
제2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5호 『(주)뱅크샐러드 외 4개 회사에 대한 혁신금융  
서비스 심사안』, 제16호 『(주)카사코리아 및 (주)한국토지신탁 등  
4개 신탁회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제17호 『(주)루센트블록 및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등 6개 신탁  
회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제18호  
『(주)편블 및 우리자산신탁(주) 등 3개 신탁회사에 대한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제19호 『(주)뮤직카우 및  
키움증권(주) 등 2개 신탁회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제20호 『(주)에이판다파트너스 및 신한투자증권(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24년도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비스로,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되는 등 금융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1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건으로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 수용시 연장되는 지정기간에 대한 운영 경과보고서 제출 기간을 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보험업권 해피콜 규제 등을 개선하고, 2023년 新보험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계약자배당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호 『스타 인터내셔널 인슈어런스(싱가포르) 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의 보험업 예비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스타 인터내셔널 인슈어런스 피티이엘티디의 한국지점 보험업 영위에 대해 예비허가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4호 『롯데손해보험(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최대주주 자격 심사 자료 등을 지연제출한 롯데손해보험(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호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크레디아그리콜 서울지점에서 발생한 직원의 횡령사고와 관련해  
은행법 제34조의3 및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6,0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

○ (위원) 라임·옵티머스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 기준을 만드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고, 그러다보니까 이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도 보류를 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묵혔던 사안임. 작년 12월에 라임·옵티머스 제재를 확정하면서  
그때 기준이 설정됐고, 그래서 다시 심의를 재개하였음.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은 잘 아시다시피 펀드 불완전판매 사안이 있고  
횡령 사안이 있음. 이번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은 횡령 사안에  
대한 것이고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는  
사안인 것 같음. 그래서 금감원에서 신분제재와 기관제재가  
나왔지만 저희는 금융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까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제재조치 원인사실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를  
다시 리뷰하는 작업을 거쳤음. 야까 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DLF 판시에서도 있다시피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쳐냈음. 그다음에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이 아니고  
미준수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될 수 있는 영역도 재고했음.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이 있는 상태에서 책임성을 보게 됐음.

책임성은 양정기준인데, 아까 보고의 '※'에도 표시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할 때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감경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음. 이상 경과를 보고 드림.

- (위원) 금감원에서 한 신분조치 관련해서 본건이 가진 상징적 의미, 특수성, 그리고 저희가 내부통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기준을 만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오늘 의결해 주시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론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결론이 설사 같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라든가 논리를 재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그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음.
  
- (위원)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5호 안건과 관련하여 크레디아그리콜 서울지점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건검토 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음. 은행법 및 지배구조법상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 ① 무역금융 업무 관련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② 무역금융 업무 관련 결재절차 등 직무분리기준, ③ 내부통제 업무위임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치 사유를 수정하고, 은행의 중요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과태료를 4,8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호 『(주)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한은행이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 6,96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이 건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 제도 정비가 되어야 할 것  
같음. 그러니까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인데 사실상 준법감시인에게 보고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제재하고 있는 것임.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제공했을 때 불건전 영업행위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 건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음. 준법감시인에게 보고된 건들은  
안 들어오고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안 된 건을 가지고 제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가능한 빨리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림.

○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답변  
(comment)하실 사항 있으신지?

○ (보고자) 말씀하신 사안은 어떻게 보면 절차적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떻게 보면 실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법령개정  
소요가 있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음.

○ (위원) 아마 입법적 내지는 제도적인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정상적인 수준이라든가 불건전 이러한 것들이 대개 추상적 관념이어서 저희가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금감원 내에서도 한 번 봤는데 오래된 논의임.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있으니 혹여 이 기회에 고려할 수 있는지를 입법적 차원이 아닌 운영의 기준을 잡는 점에서 볼 의미는 있다고 해서 금감원에서 한 번 본 다음에 은행과에 보고를 드려 협의를 해 보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7호 『(주)제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제주은행이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8호 『(인천)모아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중소기업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인천)모아저축은행 前 팀장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을 통보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9호 『우리자산신탁(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우리자산신탁(주)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관 과태료 9,000만 원을 부과 건의하는 내용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호 안건과 관련하여 (주)우리자산신탁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증선위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산정시 위반결과를 '보통'에서 '경미'로 수정하여 과태료 금액을 1억 2,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30호 『롯데손해보험(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롯데손해보험(주)에 대해 퇴직급여법에 따라 과태료 5억 5,400만 원을 부과 건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자산운용사 경영건전성 기준마련 등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3호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 방식 및 절차』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경우 인가방식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4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5호 『표준검사처리기간 경과 검사건 등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4년도 금융위원회 제2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4시 44분 폐회)